

#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아량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29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  
발 의 자 : 송아량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정진철, 전석기, 김평남,  
김제리, 송도호, 김상훈,  
김태호, 이현찬, 이승미 의원  
(9명)

## 1. 제안이유

공공자전거 이용자에 의한 도난·분실·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전거 이용안전 및 효율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공공자전거 이용자 귀책의 도난·분실·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조항을 명시함(안 제12조2 제4항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 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  
다. 기 타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공공자전거의 도난·분실·파손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2(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·운영) ① ~ ③ (생략)	제12조의2(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·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시장은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공공자전거의 도난·분실·파손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.
④ (생략)	⑤ (현행 제 4항과 같음)